

사 업 연 도	· ~ · · · ·	유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(정률법)		법 인 명	
				사업자등록번호	
자 산 구 분	①종류 또는 업종명	총 계			
	②구조(용도) 또는 자산명				
	③취득일				
④내 용 연 수 (기 준 · 신 고)					
상 각 계 산 의 기 초 가 액	재무상태표 자산가액	⑤기말현재액			
		⑥감가상각누계액			
		⑦미상각잔액 (⑤-⑥)			
	⑧회사계산감가상각비				
	⑨자본적지출액				
	⑩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				
	⑪전기말부인누계				
	⑫가감계 (⑦+⑧+⑨-⑩+⑪)				
⑬일반상각률 · 특별상각률					
상 각 범 위 액 계 산	당기 산 출 상 각 액	⑭일반상각액			
		⑮특별상각액			
		⑯계 (⑭+⑮)			
	취 득 가 액	⑰전기말현재취득가액			
		⑱당기회사계산증가액			
		⑲당기자본적지출액			
		⑳ 계 (⑰+⑱+⑲)			
	㉑잔존가액 (⑳×5/100)				
㉒당기상각시인범위액 { ⑯, 단 (⑫-⑯) ≤ ㉑인 경우 ㉑ }					
㉓회사계상상각액 (⑧+⑨)					
㉔차감액 (㉓-㉒)					
㉕최저한세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					
조 정 액	㉖상각부인액 (㉔+㉕)				
	㉗기왕부인액중 당기 손금추인액 (⑪, 단 ⑪ ≤ Δ㉔)				
㉘당기말부인액누계 (⑪+㉖- ㉗)					
당기 말 의 제 상 각 액	㉙당기의제상각액 (Δ㉔ - ㉗)				
	㉚의제상각누계 (⑩+㉙)				
신고조정감가 상각비계산 (2013. 12. 31. 이전 취득분)	㉛기준상각률				
	㉜증전상각비				
	㉝증전감가상각비 한도 [㉜-{ ㉚-(㉚-⑪) }]				
	㉞추가손금산입대상액				
	㉟동종자산 한도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				
신고조정감가 상각비계산 (2014. 1. 1. 이후 취득분)	㊱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				
	㊲기준감가상각비 한도				
	㊳추가손금산입액				
㊴추가 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 (㉚-㉞-㊳)					

작성 방법

1. 자산구분란

- 가. 종류별, 업종별, 개별자산별로 적습니다.
- 나. 취득일(③)란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사업에 사용한 날을 적습니다.

2. 상각범위액 계산란

- 가. 일반상각액(⑭)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(⑫)에 일반상각률(⑬)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나. 특별상각액(⑮)란은 일반상각액(⑭)에 특별상각률(⑬)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다. 당기상각시인범위액(㉓)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(⑫)에서 잔존가액(㉑)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 당기 산출상각액(⑯)을 적습니다. 다만,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(⑫)에서 당기산출상각액(⑯)을 차감한 금액이 잔존가액(㉑) 이하인 경우에는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(⑫)를 적습니다.

3. 회사계산상각액(㉔)란은 회사계산상각비(⑧)와 세무계산 자본적지출액(⑨)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
4. 차감액(㉕)란은 회사계산상각액(㉔)에서 당기상각시인범위액(㉓)을 차감한 잔액을 기입하고, 미달액이 있는 경우에는 Δ표시를 적습니다.

5.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(㉖)란은 "특별비용조정명세서(별지 제5호서식)"의 ⑩특별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을 적습니다.

6. 조정액란 중 상각부인액(㉖)란에는 차감액(㉕)과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(㉖)을 합하여 적고 손금불산입합니다. 다만, 차감액(㉕)란에 시인부족액(Δ표시분)이 있고 전기말 부인누계액(⑪)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(㉗)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를 한도로 한 시인부족액을 적고 손금산입합니다.

7. 전기말 부인누계(㉘)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(⑪)에 당기상각부인액(㉖)또는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(㉗)을 가감하여 적고, "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[별지 제50호(갑)서식]"의 ⑤기말잔액과 일치시킵니다.

8. 당기의제상각액(㉙)란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차감액(㉕)란의 시인부족액(Δ표시분)을 적습니다. 단,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(㉗)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.

※ ㉑~㉘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법인만 해당됩니다.

9. 기준상각률(㉑)란에는 "감가상각신고조정명세서[별지 제20호서식(3)]"의 기준상각률을 적고,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률법 기준상각률과 정액법 기준상각률을 각각 적습니다.

10. 종전상각비(㉒)

- 가.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: ㉓×㉑
- 나.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: ㉓×㉑
- 다.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: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

11. 종전감가상각비 한도(㉓)란은 종전상각비(㉒)에서 「법인세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{㉒-(㉓-⑪)}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.

12. ㉔추가손금산입대상액 금액은 동종자산한도금액 계산 전에 종전감가상각비 한도(㉓)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개별자산별로 적습니다.

13. ㉓동종자산한도 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은 "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[별지20호서식(3)]"에서 동종자산별 한도금액 계산 후 ㉓동종자산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계를 개별자산별로 종전감가상각비 한도(㉓)내에서 배분하여 적습니다.

14. ㉓추가 손금산입 후 전기말부인액 누계금액이 음수인 경우 "0"으로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 또는 중질지 80g/m²]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의 작성방법은 "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(정률법)[별지 제20호서식(1)]"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.
2. 광업권, 광업용 유형자산으로서 생산량비례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각률을
$$\frac{\text{해당 사업연도 중 해당 광구의 채굴량}}{\text{해당 광구의 총 채굴예정량}}$$
으로 하여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.
3. ㉓, ㉔란의 금액을 각각 손금불산입·손금산입합니다.

사 업 연 도	. . . ~ . . .	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동종자산 내역

①업 종		②자산종류		③자산개수	정률법	
					정액법	

2. 기준상각률의 계산

구 분	기준연도()		전년도()		전전년도()		평균	
	정률법	정액법	정률법	정액법	정률법	정액법	정률법	정액법
④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								
⑤ 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								
⑥ 기준상각률 (④÷⑤)								

3. 동종자산 신고조정 한도

⑦ 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	
⑧ 종전상각비 합계 (⑦×⑥(평균값))	
⑨ 「법인세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	
⑩ 신고조정 한도 합계 (⑧-⑨)	
⑪ 추가손금산입대상액 합계	
⑫ 동종자산 신고조정 손금산입액계 (Min(⑩, ⑪))	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동종자산별로 작성합니다.
2. 1. 동종자산 내역 (①, ②, ③)란은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자산종류구분, 업종구분 및 해당 동종자산의 개수를 적습니다.
3. 2. 기준상각률의 계산 중 기준연도·전년도·전전년도 오른쪽의 괄호에는 해당연도를 숫자만 적습니다.(예: 2010)
4.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(④)란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도와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「법인세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를 적습니다.
5. 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(⑤)란에는 기준연도와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취득가액(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) 또는 미상각잔액(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)의 합계를 적습니다.
6. 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(⑦)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취득가액(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) 또는 미상각잔액(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)의 합계를 적습니다.
7. 종전상각비 합계(⑥)란에는 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(⑦)에 기준상각률을 곱한 금액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)을 적습니다.
8. ⑨란에는 "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유형·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[별지20호서식(1)·(2)]"에서 (1)의 경우 {㉓-(㉔-⑪)}, (2)의 경우 {㉔-(㉔-㉕)}의 금액을 동종자산별로 합하여 적습니다.
9. 추가손금산입대상액 합계(⑩)란에는 "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유형·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[별지 20호서식(1)·(2)]"에서 (1)의 경우 ㉔, (2)의 경우 ㉕의 금액을 동종자산별로 합하여 적습니다.
10. ㉔동종자산 신고조정 손금산입액계는 신고조정 한도 합계(⑩)와 추가손금산입대상액 합계(⑩)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.

사 업 연 도	. . . ~ . . .	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	법 인 명			
			사업자등록번호			

①자산구분		코드	② 합계액	유형자산			⑥ 무형자산
				③ 건축물	④ 기계장치	⑤ 기타자산	
재무 상태표 상가액	⑩기말현재액	01					
	⑩감가상각누계액	02					
	⑩미상각잔액	03					
⑩상각범위액		04					
⑩회사손비계상액		05					
조정 금액	⑩상각부인액 (⑩⑤-⑩④)	06					
	⑩⑦시인부족액 (⑩④-⑩⑤)	07					
	⑩⑧기왕부인액 중 당 기손금추인액	08					
⑩⑨신고조정손비계상액		09					

작성 방법

- ⑩⑤회사손비계상액란 : 「법인세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결산서상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⑩⑧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란 : 당기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당기 이전까지 한도초과로 부인했던 금액과 당기 시인부족액 중 작은 금액[별지 제20호서식(1) 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⑩⑦금액, 별지 제20호서식(2) 유형·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⑩④금액의 합]을 적습니다.
- ⑩⑨신고조정손비계상액란: 「법인세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산입한 금액 {"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유형·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[별지 제20호서식(1)·(2)]"의 추가손금산입액 합계[(1)의 ⑩⑤, ⑩⑧, (2)의 ⑩③, ⑩⑥]} 을 적습니다.